

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744
----------	------------

2012년 7월 9일
문화체육관광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2년 4월 10일, 최강선의원 발의
- 나. 회부일자 : 2012년 4월 12일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23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5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
(2012년 6월 27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최강선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 및 지하철 이용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승강편의시설(에스컬레이터, 엘리베이터, 캐노피)설치를 하고 있으나, 설계 시 디자인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는 것으로 교통약자 등을 위해 설치하는 승강편의시설의 경우에 디자인 심의를 생략

할 수 있도록 하여 설계 기간을 단축하고 예산절감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것임.
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,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림.

나. 주요골자

- 교통약자 등을 위해 기존 출입구를 개량하는 경우와 표준형 캐노피 및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디자인 심의를 생략하도록 함. (별표1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(수석전문위원 김동수)

-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 등을 위한 지하철 출입구 개선공사를 위하여 표준형 캐노피 및 엘리베이터 설치에 대해서는 디자인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.
- 현재는 지하철 캐노피 설치에 대하여 지하철 관리 기관인 도시철도공사와 서울메트로의 사업계획을 신청 받아 ‘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’의 심의를 통하여 결정하고 있음.
- 그동안 민선4기에서 디자인서울을 추진하면서 도시경관의 개방감을 위하여 캐노피 등 가로시설물의 설치를 최소화하여 왔으나, 폭설·폭우로 인한 민원과 안전상의 문제로 지하철 캐노피 설치에

대한 요구가 증가되고 있음. 현재 지하철 출입구는 1,305곳으로 이중 약 650개소에 캐노피가 설치되어 있으나 약 855개소에는 미설치된 상태임.

- 이에 서울시는 2010년 11월 말부터 차폐감이 적고 간결한 지하철 캐노피 표준형디자인을 개발·보급하여 디자인 심의 없이 발주처 판단에 의해 캐노피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, 표준형 디자인을 일부 변경한 캐노피 설치 또한 허용하고 있는 추세임.
- 또한 동 조례 제11조제4항제1호바목에서 “가목에서 마목까지 심의 대상에서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제품과 서울특별시 표준형디자인 제품은 제외한다”고 규정하고 있고, 서울시가 도시 경관을 위하여 관련 업체에 권장한 표준형디자인을 서울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는 것은 중복성이 있고,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됨.
- 이에 대한 서울시 해당 부서의 입장은 지하철 출입구의 개량뿐만이 아니라 신설하는 것도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, 그 대상에 에스컬레이터도 포함하고자 함. 그러므로 교통약자 등을 위하여 지하철 출입구를 개선하는 공사에서 표준형캐노피를 설치하는 것에 대하여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사료됨.
- 디자인심의를 생략할 경우 공사기간의 단축으로 예산이 절감되고, 시민의 불편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으므로 동 일부개정안과 같이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: 구성하지 않았음

7. 수정안의 요지 : 없음

8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 (출석위원 전원 찬성)

9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744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12년 4월 10일

발의자 : 최강선 의원

찬성자 : 13 명

1. 제안이유

교통약자 및 지하철 이용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승강편의시설(에스컬레이터, 엘리베이터) 설치를 하고 있으나, 설계 시 디자인 심의를 통과토록 되어 있어 설계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면서 예산낭비와 시민 불편이 가중되는 점 등의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교통약자 등을 위해 기존 출입구를 개량하는 경우와 표준형 캐노피 및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경우 디자인 심의 생략. (별표1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 : 「경관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

(1) 신·구조문 대비표 : 별 첨

(2) 규제심사 결과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1 제2호 가로시설물 가목 중 “캐노피를 포함한다”를 “캐노피를 포함한다. 단, 교통약자 등을 위해 기존 출입구를 개량(개선)하는 경우와 표준형 캐노피 및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</p> <p>[별표 1]</p> <p>2. 가로시설물 지하철시설</p> <p>가. 지하철출입구(캐노피를 포함한다)</p> <p>나. 지하철안내표지판</p> <p>다. 환기구(흡·배기구)</p> <p>라. 지상노출 엘리베이터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</p> <p>[별표 1]</p> <p>2. 가로시설물 지하철시설</p> <p>가. 지하철출입구(캐노피를 포함한다. 단, 교통약자 등을 위해 기존 출입구를 개량(개선)하는 경우와 표준형 캐노피 및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.)</p> <p>나. 지하철안내표지판</p> <p>다. 환기구(흡·배기구)</p> <p>라. 지상노출 엘리베이터</p>